제4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4.1 조종자격이 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과 같다.

○ 동력비행장치(Motor Flying Vehicle) : 타면조종형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Motor Flying Vehicle) : 체중이동형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Rotor Flying Vehicle) : 초경량 헬리콥터
○ 회전익비행장치(Rotor Flying Vehicle)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행글라이더(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패러글라이더(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유인자유기구
○ 무인비행기(자체중량이 12kg 초과)
○ 무인헬리콥터(자체중량이 12kg 초과)
○ 무인멀티콥터(자체중량이 12kg 초과)
○ 무인비행선(길이 7m 초과, 자체중량 12kg 초과)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한국교통안전공단)

4.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4.2.1 조종자 증명 취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 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4.2.2 조종자 증명 효력정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 "주류등"이란「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말한다.

4.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와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 표 4-1

[표 4-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구분	기준
법인 성격	항공 조종,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전문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 및 장비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학과시험을 위한 학과시험장(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실기시험을 위한 이륙 및 착륙 시설(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별표 4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4.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4.4.1 동력비행장치 조종자

○ 업무범위 : 동력비행장치의 조종

○ 응시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종류의 동력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에 한함)에 탑승하여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류의 동력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에 한한다)에 탑승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4.4.2 행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 업무범위 : 행글라이더의 조종, 행글라이더 체험 및 경관조망 비행
○ 응시기준 : 행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180시간(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이상 비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상인 사람

4.4.3 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 업무범위 : 패러글라이더의 조종, 패러글라이더 체험 및 경관조망 비행
○ 응시기준 :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180시간(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이상 비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상인 사람

4.4.4 낙하산류 2인승 강하자

○ 업무범위 : 낙하산류의 조종, 낙하산류의 체험 및 경관조망비행
○ 응시기준 : 최근 1년 기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하여 총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을 갖춘 사람(사각 낙하산의 경우 총 200회 이상)

4.4.5 유인자유기구 조종자

○ 업무범위 : 유인자유기구의 조종
○ 응시기준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사람

4.4.6 무인비행기 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비행기의 조종
○ 응시기준 :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4.4.7 무인헬리콥터 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헬리콥터의 조종
○ 응시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4.4.8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멀티콥터의 조종
○ 응시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4.4.9 무인비행선 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비행선의 조종
○ 응시기준 : 무인비행선을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4.4.10 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 업무범위 : 회전익비행장치의 조종
○ 응시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종류의 회전익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에 한함)에 탑승하여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전익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에 한한다)에 탑승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4.4.11 동력패러글라이더 조종자

○ 업무범위 :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조종
○ 응시기준 :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한국교통안전공단)

4.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증명 응시자 시험면제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과시험 면제
○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다음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 비행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실기시험 면제
○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에 한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음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 타면조종형비행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 경량헬리콥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

○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한국교통안전공단)

4.6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 비행경력증명서등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 과정 이수증명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다음의 비행장치종류별 지도조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공통사항

- 업무범위 : 비행시간 확인 및 교육훈련
- 등록기준 : 20세 이상으로 해당 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

○ 동력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동력비행장치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동력비행장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왕복엔진의 육상단발 비행기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

○ 행글라이더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행글라이더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행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패러글라이더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낙하산류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낙하산류의 강하횟수·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낙하산류 조종자증명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00회(사각 낙하산의 경우에는 500회를 말한다) 이상의 강하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 유인자유기구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유인자유기구의 비행시간 확

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유인자유기구의 비행시간이 총 70시간 이상인 사람

○ 무인비행기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비행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 무인헬리콥터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헬리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멀티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 무인비행선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무인비행선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무인비행선을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 회전익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회전익비행장치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회전익비행장치 비행시간이 200시간(헬리콥터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

○ 동력패러글라이더 지도조종자
- 업무범위 : 동력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등록기준 : 동력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 이상인 사람

○ 지도조종자 등록 취소 :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항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 비행경력증명서등(로그북을 포함한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한국교통안전공단)

4.7 비행시간 또는 강하횟수의 산정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경력등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낙하산류는 강하한 횟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

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한국교통안전공단)

4.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신체검사

비행장치 조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항공안전법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4.9 시험과목 및 범위

4.9.1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

4.9.1.1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동력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동력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동력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동력비행장치 이·착륙에 관한 사항
- 동력비행장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동력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동력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2 행글라이더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행글라이더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행글라이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이착륙 조작에 관한 사항
-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 행글라이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행글라이더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3 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패러글라이더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패러글라이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이착륙 조작에 관한 사항
-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 패러글라이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패러글라이더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4 낙하산류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낙하산류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낙하산류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낙하산류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 동승자 안전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낙하산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5 유인자유기구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유인자유기구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유인자유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유인자유기구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유인자유기구 이·착륙에 관한 사항
- 유인자유기구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유인자유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유인자유기구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6 무인비행기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무인비행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기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기 이·착륙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7 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무인헬리콥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무인헬리콥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무인헬리콥터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무인헬리콥터 이·착륙에 관한 사항
- 무인헬리콥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무인헬리콥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무인헬리콥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8 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무인멀티콥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무인멀티콥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무인멀티콥터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무인멀티콥터 이·착륙에 관한 사항
- 무인멀티콥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무인멀티콥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무인멀티콥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9 무인비행선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무인비행선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선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선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선 이·착륙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선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무인비행선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10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회전익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회전익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회전익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회전익비행장치 이·착륙에 관한 사항
- 회전익비행장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회전익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회전익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1.11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 비행이론 및 운용
- 동력패러글라이더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동력패러글라이더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 동력패러글라이더 이·착륙에 관한 사항
- 동력패러글라이더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 동력패러글라이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동력패러글라이더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4.9.2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실기시험 구분 및 범위

4.9.2.1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동력비행장치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2 행글라이더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 전 점검
-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행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 착륙자세 및 장비관리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3 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 전 점검
-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패러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 착륙자세 및 장비관리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4 낙하산류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 낙하산의 종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 전 점검

- 낙하산의 공중조작 및 강하자세
- 착륙자세 및 낙하산 관리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5 유인자유기구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유인자유기구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6 무인비행기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무인비행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7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무인헬리콥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8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무인멀티콥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9 무인비행선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무인비행선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10 회전익비행장치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회전익비행장치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2.11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구술시험

-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4.9.3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실기시험 채점표

4.9.3.1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2] 동력비행장치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5	점검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 (지상활주)	7	직진활주	
	8	고속활주	
실기시험 (이륙조작)	9	정풍 및 측풍 이륙	
	10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 (공중조작)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수평비행	
	13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4	실속회복	
	15	비상조작	
실기시험 (착륙조작)	16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7	복행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8	착륙 후 점검	
	19	기체의 주기와 안전확보	
	20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2 행글라이더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3] 행글라이더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3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5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6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7	비행 전 장비 점검	
	8	이륙 전 점검사항	
실기시험 (이륙)	9	이륙	
	10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실기시험 (공중조작)	11	상승비행	
	12	행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13	표준 및 선회비행	
	14	활공자세	
	1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16	긴급 하강법	
실기시험 (착륙조작)	17	착륙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3 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4] 패러글라이더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3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5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6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7	비행 전 장비 점검	
	8	이륙 전 점검사항	
실기시험(이륙)	9	이륙	
	10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실기시험 (공중조작)	11	상승비행	
	12	패러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13	표준 및 선회비행	
	14	활공자세	
	1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16	긴급 하강법	
실기시험 (착륙조작)	17	착륙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4 낙하산류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5] 낙하산류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2인승 자유강하 기초 원리	
	2	2인승 강하 낙하산류 구조와 기능	
	3	공역제한 및 금지행위	
	4	강하관련 기상	
	5	강하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 (강하 전 – 지상 절차)	6	강하계획 및 사전 점검	
	7	낙하산류 및 기타 관련 장비 상태점검	
	8	착지 예정 장소 점검	
	9	강하 중 탑승객의 행동절차에 대한 교육	
실기시험 (강하 전 – 비행 중 절차)	10	탑승객 하네스 결합자세, 순서 및 견고성 확인	
	11	탑승객 긴장해소를 위한 소통방법	
	12	항공기 이탈 시기 및 자세 연습	
	13	다른 강하자와의 강하절차 숙지 상태 확인	
	14	기능고장 대응절차 연습	
실기시험 (자유 강하 중 절차)	15	안정된 항공기 이탈 및 자세 유지	
	16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유지 상태에서 드로우그(Drogue) 개방	
	17	드로우그(Drogue) 개방 후 장비검사	
	18	비 정상 자유강하 자세(스핀/롤)의 회복 능력	
	19	정확한 낙하산 개방자세 유지 및 고도준수	
실기시험 (낙하산 산개 후 절차)	20	낙하산 산개 검사	
	21	착지지점 및 풍향 · 풍속 확인	
	22	탑승객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탑승객 하네스 이완	
	23	안정된 낙하산 조종	
	24	안정된 착지	
실기시험 (착지 후 절차)	25	탑승자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26	강하관련 특이사항 질의 · 응답	
	27	낙하산 회수 및 포장	
실기시험 (종합능력)	28	계획성	
	29	판단력	
	30	규정의 준수	
	31	낙하산 및 소요장비 취급의 적절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5 유인자유기구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6] 유인자유기구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하중 산출 및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 (비행 전 준비)	5	장비 전개 및 검사	
	6	지상요원 BRIEFING	
	7	INFLATION	
실기시험 (이륙과 상승)	8	이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9	이륙	
	10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륙포기	
실기시험 (공중조작)	11	비행조종 능력	
	12	항법	
	13	연료의 운영	
	14	비상시 대책 및 절차 수행	
실기시험 (착륙조작)	15	착륙지 선정, 진입, 통과	
	16	착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17	착륙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기체의 정리	
	20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6 무인비행기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7] 무인비행기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5	점검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 (지상활주)	7	직진활주	
	8	고속활주	
실기시험 (이륙조작)	9	정상이륙	
	10	측풍이륙	
	11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 (공중조작)	12	상승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5	실속회복 및 비상조작	
실기시험 (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18	복행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9	비행 후 점검	
	20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7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8] 무인헬리콥터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 (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3	좌우 수평비행	
	14	원주비행(러더턴)	
	15	비상조작	
실기시험 (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0	안전거리 유지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8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9] 무인멀티콥터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 (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11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2	삼각비행	
	13	원주비행(러더턴)	
	14	비상조작	
실기시험 (착륙조작)	15	정상접근 및 착륙	
	16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7	비행 후 점검	
	18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19	안전거리 유지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9 무인비행선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10] 무인비행선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풍향 및 풍속에 관련한 사항	
	5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발동기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 (이륙과 상승)	9	이륙 및 상승	
	10	비상상황 발생시 이륙포기	
실기시험 (공중조작)	11	정지비행	
	12	상승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표준 및 선회비행	
	15	비상조작	
실기시험 (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10 회전익비행장치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11] 회전익비행장치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 (비행 전 절차)	5	점검 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7	지상활주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 (이륙과 상승)	9	정상 및 측풍이륙	
	10	롤링 이륙	
	11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 (공중조작)	12	상승 및 하강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선회비행	
	15	정지비행	
	16	비상조작	
실기시험 (착륙조작)	17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8	직진 오토로테이션 착륙	
	19	복행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20	착륙 후 점검	
	21	기체의 주기와 안전확보	
	22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23	계획성	
	24	판단력	
	25	규칙의 준수	
	26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9.3.11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영역 및 항목 채점표(예시)

[표 4-12] 동력패러글라이더 채점표

순번 \ 구분		영역 및 항목	등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 (비행 전 준비)	5	비행 전 점검	
	6	발동기의 시동	
	7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 (이륙조작)	8	정풍 및 측풍이륙	
	9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포기	
실기시험 (비행조작)	10	비행조작	
	11	로패스(LOW PASS)	
	12	슬라롬(SLALOM)	
	13	터치 앤 고(TOUCH AND GO)	
실기시험 (착륙조작)	14	착륙조작	
	15	비상조치	
실기시험 (비행 후 점검)	16	비행 후 점검	
	17	기체의 정리	
	18	비행기록	
실기시험 (종합능력)	19	계획성	
	20	판단력	
	21	규칙의 준수	
	22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4.10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교관의 현황

○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위탁되어 있다.

4.11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 다음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 이륙·착륙 시설
-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4.1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4.1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13.1 학과교육

비행장치 종류별 학과교육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 표 4-13과 같다.

[표 4-13] 비행장치 종류별 학과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기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8
	4. 비행운용 이론	7
	계	20시간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선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비행이론 및 운용	15
		20시간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2
	3. 항공역학(비행이론)	5
	4. 비행운용 이론	11
	계	20시간

4.13.2 실기교육

비행장치 종류별 실기교육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 표 4-14, 4-15와 같다.

[표 4-14] 비행장치 종류별(무인비행기 제외) 실기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	동승 비행 시간	단독 비행시간 (또는 기장시간)	교육 시간
동력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 라이더	1. 장주 이륙·착륙	8	3	11
	2. 공중 조작	5	2	7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회전익비행장치	1. 장주 이착륙	5	2	7
	2. 공중 조작	3	2	1
	3.지표부근에서의 조작	4	1	5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3	–	3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1. 장주 이착륙	2	3	5
	2. 공중 조작	2	3	5
	3.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3	6	9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	1
	계	8시간	12시간	20시간
㈜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는 실기교육전 모의비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비행교육을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선	1. 장주 이륙·착륙	8	4	12
	2. 공중 조작	4	2	6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1	2
	계	13시간	7시간	20시간

[표 4-15] 무인비행기 실기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	축소모형기체 또는 모의비행 시뮬레이터 비행시간	실물등록기체 비행시간	계
무인비행기	1. 장주 이착륙	8	4	12
	2. 공중 조작	4	2	6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1	2
	계	13시간	7시간	20시간

4.14 전문교육기관 관련 정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관련 정보에 대해서 http://www.kaa.atims.kr/에서 공고하고 있다.

[그림 4-1]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현황 홈피

㈜ http://www.kaa.atims.kr

제5장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및 공역

5.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한 공역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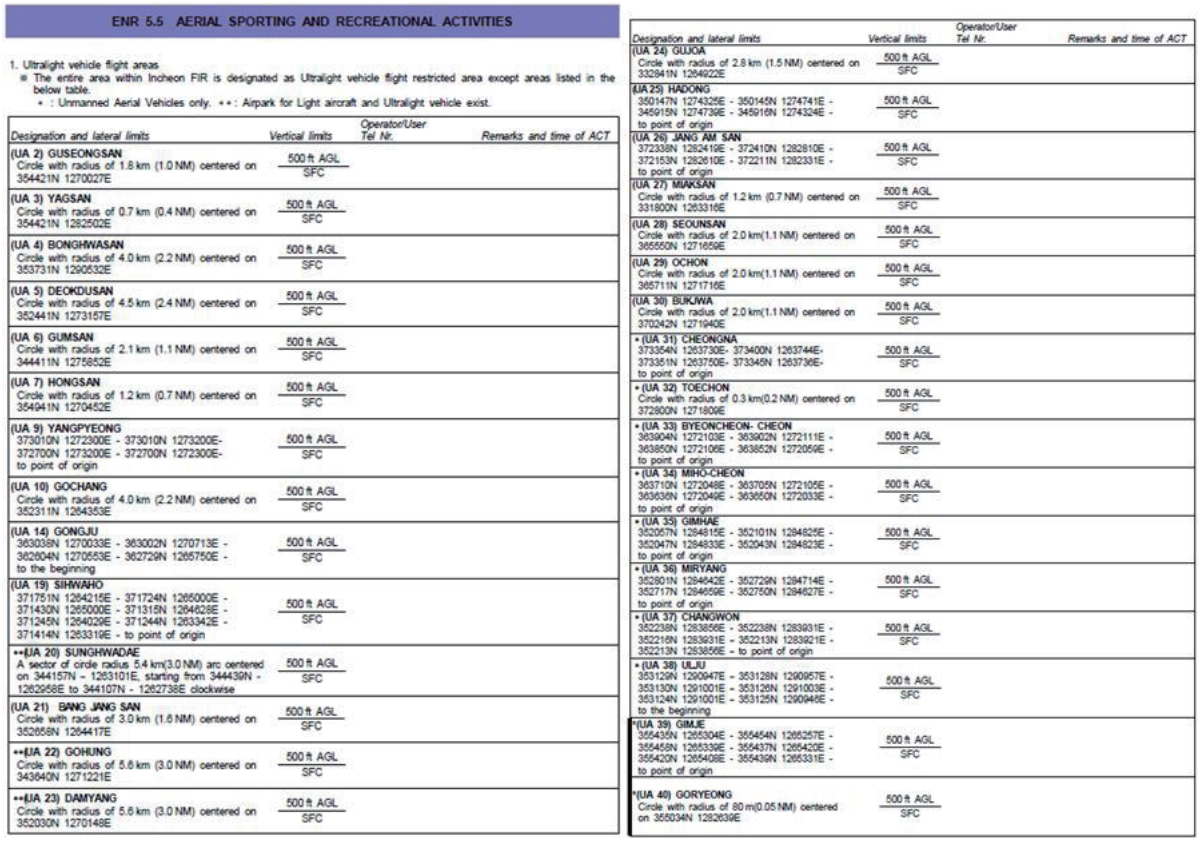

ENR 5.5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1.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 The entire area within Incheon FIR is designated as Ultralight vehicle flight restricted area except areas listed in the below table.
* : Unmanned Aerial Vehicles only. ** : Airpark for Light aircraft and Ultralight vehicle exist.

Designation and lateral limits	Vertical limits	Operator/User Tel Nr.	Remarks and time of ACT
(UA 2) GUSEONGSAN Circle with radius of 1.8 km (1.0 NM) centered on 354421N 1270027E	500 ft AGL SFC		
(UA 3) YAGSAN Circle with radius of 0.7 km (0.4 NM) centered on 354421N 1282502E	500 ft AGL SFC		
(UA 4) BONGHWASAN Circle with radius of 4.0 km (2.2 NM) centered on 353731N 1290532E	500 ft AGL SFC		
(UA 5) DEOKDUSAN Circle with radius of 4.5 km (2.4 NM) centered on 352441N 1273157E	500 ft AGL SFC		
(UA 6) GUMSAN Circle with radius of 2.1 km (1.1 NM) centered on 344411N 1275852E	500 ft AGL SFC		
(UA 7) HONGSAN Circle with radius of 1.2 km (0.7 NM) centered on 354941N 1270452E	500 ft AGL SFC		
(UA 9) YANGPYEONG 373010N 1272300E - 373010N 1273200E- 372700N 1273200E - 372700N 1272300E-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10) GOCHANG Circle with radius of 4.0 km (2.2 NM) centered on 352311N 1264353E	500 ft AGL SFC		
(UA 14) GONGJU 363038N 1270033E - 363002N 1270713E - 362604N 1270553E - 362729N 1265750E - to the beginning	500 ft AGL SFC		
(UA 19) SIHWAHO 371751N 1264215E - 371724N 1265000E - 371430N 1265000E - 371315N 1264628E - 371245N 1264029E - 371244N 1263942E - 371414N 1263319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20) SUNGHWADAE A sector of circle radius 5.4 km(3.0 NM) arc centered on 344157N – 1263101E, starting from 344439N - 1262958E to 344107N - 1262738E clockwise	500 ft AGL SFC		
(UA 21) BANG JANG SAN Circle with radius of 3.0 km (1.6 NM) centered on 352656N 1264417E	500 ft AGL SFC		
**(UA 22) GOHUNG Circle with radius of 5.6 km (3.0 NM) centered on 343640N 1271221E	500 ft AGL SFC		
**(UA 23) DAMYANG Circle with radius of 5.6 km (3.0 NM) centered on 352030N 1270148E	500 ft AGL SFC		

Designation and lateral limits	Vertical limits	Operator/User Tel Nr.	Remarks and time of ACT
(UA 24) GUJOA Circle with radius of 2.8 km (1.5 NM) centered on 332941N 1264922E	500 ft AGL SFC		
(UA 25) HADONG 350147N 1274325E - 350145N 1274741E - 345915N 1274739E - 345916N 1274324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26) JANG AM SAN 372338N 1282419E - 372410N 1282810E - 372153N 1282610E - 372211N 1282331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27) MIAKSAN Circle with radius of 1.2 km (0.7 NM) centered on 331800N 1263316E	500 ft AGL SFC		
(UA 28) SEOUNSAN Circle with radius of 2.0 km(1.1 NM) centered on 365550N 1271659E	500 ft AGL SFC		
(UA 29) OCHON Circle with radius of 2.0 km(1.1 NM) centered on 365711N 1271716E	500 ft AGL SFC		
(UA 30) BUKWA Circle with radius of 2.0 km(1.1 NM) centered on 370242N 1271940E	500 ft AGL SFC		
*(UA 31) CHEONGNA 373354N 1263730E- 373400N 1263744E- 373351N 1263750E- 373345N 1263736E-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32) TOECHON Circle with radius of 0.3 km(0.2 NM) centered on 372800N 1271806E	500 ft AGL SFC		
*(UA 33) BYEONCHEON- CHEON 363904N 1272103E - 363902N 1272111E - 363850N 1272106E - 363852N 1272059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34) MIHO-CHEON 363710N 1272048E - 363705N 1272105E - 363636N 1272046E - 363650N 1272033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35) GIMHAE 352057N 1284815E - 352101N 1284825E - 352047N 1284833E - 352043N 1284823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36) MIRYANG 352801N 1284642E - 352729N 1284714E - 352717N 1284656E - 352750N 1284627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37) CHANGWON 352238N 1283856E - 352238N 1283931E - 352216N 1283931E - 352213N 1283921E - 352213N 1283856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38) ULJU 353129N 1290947E - 353128N 1290957E - 353130N 1291001E - 353126N 1291003E - 353124N 1291001E - 353125N 1290946E - to the beginning	500 ft AGL SFC		
*(UA 39) GIMJE 355435N 1265304E - 355454N 1265257E - 355455N 1265339E - 355437N 1265429E - 355420N 1265408E - 355439N 1265331E - to point of origin	500 ft AGL SFC		
*(UA 40) GORYEONG Circle with radius of 80 m(0.05 NM) centered on 355034N 1262639E	500 ft AGL SFC		

[그림 5-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AIP ENR 5.5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Effective : 1600UTC 28 MAR 2018)

* : Unmanned Aerial Vehicles only.(UA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Airpark for Light aircraft and Ultralight vehicle exist.(UA 20, 22, 23)

㈜ 표기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을 제외한 모든 공역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다.